관세평가분류원

2023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 공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의 이슈와 그 결정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주요 판례, 결정 등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관세평가분류원장

01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구성 가능)

02 공모 분야

▶▶▶ 관세평가 1개 부문

03 평석 대상

▶▶▶ **[권고 주제]** 다음 판례 중에서 선택 (상세내역 ☞ 별첨 5 참조)

연번	판례번호	쟁점
1	대법원 2014두8636 (2014.11.17.) 서울고법 2015누20312 (2014.5.15.) 서울행정 2011구합2664 (2012.9.14.) [참조 1-1] 대법원 2015두49320 (2017.4.7.) 부산고법 2015누20312 (2015.7.3.) 부산지법 2014구합21401 (2015.1.8.)	실제화주(구매자)에 대한 판단
2	대법원 2018두47714 (2022.11.17.) 서울고법 2017누82446 (2018.5.11.) 서울행정 2017구합52153 (2017.10.13.) [참조 2-1] 수원지법 2021구합 63205(2022.4.28)	실제지급가격(가격조정약관, 수량할인 해당 여부)
3	대법원 2011두6554 (2011.6.30.) 부산고법 2010누4117 (2011.2.11.) 부산지법 2009구합4563 (2017.10.13.)	실제지급가격(연구개발비, 제품지원비)
4	대법원 2020두51617 (2021.2.8.기각) 부산고법 2015누20763 (2020.9.11.) [참조 4-1] 대법원 2015두745(2020.2.13.) 부산고법 2014누328(2015.1.9.) 부산지법 2012구합5818(2014.2.20.) [참조 4-2]	상표와 기술적 정보 사용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원재료 등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연번	판례번호	쟁점
	서울행정 2019구합59462(2021.2.19.) [참조 4-3] 대법원 2016두34110 (2019.2.14.) 서울고법 2015누36395 (2016.1.14.) 서울행정 2013구합59576 (2015.1.30.)	
5	대법원 2020두46455(2020.11.26.) 서울고법 2017누77871(2020.7.8.) 서울행정 2015구합83269(2017.9.14.)	권리사용료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 판단
6	서울고법 2013누27182 (2014.4.30.) 수원지법 2012구합8350 (2013.8.22.) [참조 6-1] 서울행정 2018구합87743(2019.8.2.)	로열티, 독점판매권
7	대법원 2019두48172 (2019.11.14.) 대구고법 2018누3760 (2019.7.5.) 대구지법 2017구합23331 (2016.6.27.) [참조 7-1] 대법원 97누 12495(1998.12.8) 부산고법 96누6196(1997.7.2.)	특별수주물품에 대한 추가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8	대법원 2017두35547 (2017.5.31.) 부산고법 2016누23080 (2017.1.13.) 부산지법 2015구합23824 (2016.9.8.)	조건·사정,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9	대법원 2022두 45470(2022.9.29.) 서울고법 2021누 38613(2022.5.10) 서울행정 2019구합54917 (2021.2.17.)	실질판매자,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제4방법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10	대법 2020두36939 (2020.6.25.) 부산고법 2019누23296 (2020.2.7.) 부산지법 2018구합20697 (2019.8.23.)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1	대법원 2021두53559 (2022.2.11.) 서울고법 2019누64978 (2021.9.3.) 서울행정 2017구합79585 (2016.6.27.)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제4방법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12	대법원 2022두 38281(2022.6.30.) 서울고법 2021누 37238(2022.2.17) 서울행정2019구합57015 (2021.1.29.)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제4방법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13	대법원 2017두72782 (2018.3.15.) 부산고법 2017누21661 (2017.11.10.) 부산지법 2015구합20801 (2017.4.14.)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4	대법원 2019두62987 (2020.3.26. 기각) 서울고법 2019누39514 (2019.11.27.) 인천지법 2016구합50338 (2019.2.14.)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제4방법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연번	판례번호	쟁점
15	대법원 2019두62079 (2020.4.9. 기각) 부산고법 2018누21903 (2019.11.8.) 부산지법 2017구합20287 (2018.5.31.)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제4방법 과세가격의 적정 여부
16	대법원 2018두57933 (2019.1.17.) 서울고법 2018누30923 (2018.8.31.) 서울행정 2016구합66308 (2017.12.1.)	부품과 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결합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17	서울고법 2014누73908 (2015.6.18.) 서울행정 2014구합59429 (2014.11.14.)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18	서울고법 2020누34638 (2020.10.30. 확정) 서울행정 2018구합62799 (2020.1.31.)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한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19	대법원 2022두37981 (2022.6.30. 기각) 서울고법 2021누35089 (2022.2.11.) 서울행정 2017구합83762 (2021.1.26.)	수탁가공용 부분품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20	대법원 2020두36104 (2020.6.25. 기각) 서울고법 2019누45403 (2020.1.29.) 서울행정 2018구합77913 (2019.5.10.)	보세공장 제품과세 물품의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방법

※ 참가 신청하신 후 평석 대상 판결을 정하신 분들께 해당 판결문 전문을 주최 측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 **[자율 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ㅇ (국내)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결 (전심 및 하급심 포함)
- ㅇ (해외) 법원 판결 및 행정기관 결정례 (예 : 미국 관세청 rulings)

※ 결정 또는 판결문은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일부 비공개 판례의 경우 참가자 요청 시 주최 측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04 평석 형식

▶▶▶ A4 용지 **15매 내외**의 서술식으로, 대법원 판례해설의 형식을 참조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 별첨 평석 작성 요령을 참고(☞ 별첨 6, 7 참조)하되, **자유 형식 가능**

※ A4 용지 1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전체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 평석 후단에 해당 **평석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를 필수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판례해설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05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 (☞ 별첨 1 참조)

▶▶▶ 참가 신청 기간 : **2023.4.10.(월) - 5.8.(월)**

※ 참가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접수(최종 평석 제출)가 가능**하나 평석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평석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 기간 이내에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장현주 관세행정관
☏ 042-714-7549 / wlals0430@korea.kr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손민기 차장, 정성윤 부연구위원
☏ 02-3416-5196, 5187 / smk0110@kctdi.or.kr

06 평석 제출

▶▶▶ 제출 기한 : 공고일부터 9.30.(토) 까지

▶▶▶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07 검증 및 심사

▶▶▶ 검증

○ 표절, 도용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검증 실시
-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 15% 초과 시 세부 조사 후 적합여부 판정

○ 연구 부정행위 확인 시 응모 무효 처리

▶▶▶ 심사

○ [심사기준] ① 주제의 창의성·적절성 ② 내용의 논리성·일관성 ③ 방법의 타당성·적절성 ④ 결과의 활용성·기여도

○ [심사위원] 관세청 공무원, 교수, 전문직 등 관련 전문가 6인 내외

○ [심사방법]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서면 평가

- (가점) 권고주제 선택, 학생(석사과정 이하, 대표연구자 기준)에 대해 평가점수 5% 범위 내 적용 가능
- (감점) 논문 분량 50매 초과 시 5% 범위 내 적용 가능

08 시상 및 우수작 발표회

▶▶▶ 시상 내역

- 대　　상 (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 (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우 수 상 (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장 려 상 (8)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공무원** 참가자의 경우 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작 발표 : **2023.11월**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 지연 등 변경 시 공모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09 기타 사항

▶▶▶ 연구윤리서약서(☞ 별첨 2)와 판례평석 활용 동의서(☞ 별첨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 4)를 제출하여야 함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동의 여부 선택)

- 제출된 평석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평석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평석과 유사한 평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평석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평석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준용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판례평석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받을 것을 **권장**함(다만, 학위논문으로 제출 및 활용할 수 없음)

별첨 1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 참가신청서

□ 대표자

■ 성명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법무법인 00 변호사*
■ 연락처	*010-1234-5673*	■ 이메일	*000000@customs.go.kr*
■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000동 0000동*		
■ 평석대상	*대법원 선고 2020두51242 판결(2021.2.4.) 외* (참가신청 후 제출 가능)		
■ 평석주제	*평석개요 작성* *(예 : 수출자의 책임으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수입신고 전에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되어 수입신고되는 물품이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호에서 정한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팀원

■ 성명①	*김연구*	■ 소속 및 직위	*관세컨설팅(주) 관세사*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 성명②	*박관세*	■ 소속 및 직위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별첨 2

연구 윤리 서약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3년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사전 이중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수상자격 박탈, 상금반환 등 수상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3. . .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성 명 : (서명)

별첨 3

판례 평석 활용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3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에 참가하면서, 제출된 평석이 관세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 편집 및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3. . .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성 명 : (서명)

별첨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에 참가하면서, 참가신청서 상의 개인정보를 상기 공모전 운영을 위하여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의 수집: 참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이메일, 전공(학생의 경우), 주소 등
* 정보의 활용: 수상자 발표(공고), 보도자료 배포, 우수평석집 책자 발간 등

2023. . .

ㅇ 소 속 :

ㅇ 직 위 :

ㅇ 성 명 : (서명)

별첨 5

관세평가 판례평석 권고 판례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1	대법원 2014두8636 (2014.11.17.) 서울고법 2015누20312 (2014.5.15.) 서울행정 2011구합2664 (2012.9.14.) 〈㈜풀◎◎〉	실제화주 (구매자)	"... ...위 대법원 2002 두 8442 판결은 국세기본법 (2007. 12. 31. 법률 제 883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 14 조 제 1 항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수입물품의 화주를 법률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법적 소유권 질서를 넘어서 당사자들의 거래내용 자체를 경제적으로 관찰하여 일련의 수입 과정을 주도한 당사자가 수입물품의 화주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 ... 국세기본법 제 14 조 제 3 항은 '①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객관적 행위형식 요건), ②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주관적 조세회피 목적 요건)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① 의 요건은 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 취하는 법적 형식과는 달리 여러 가지 다른 법적 형식을 끼워 넣는 우회행위, 다단계행위를 의미하고, ② 의 요건은 정당한 사업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 조세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 1-1 AML코리아리미티드] 대법원 2015두49320 (2017.4.7.) 부산고법 2015누20312 (2015.7.3.) 부산지법 2014구합21401 (2015.1.8.)
2	대법원 2018두47714 (2022.11.17.) 서울고법 2017누82446 (2018.5.11.) 서울행정 2017구합52153 (2017.10.13.)	실제지급가격 (가격조정약관, 수량할인)	"... ... 원고와 아마노 사이에는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이 반드시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으면 '연간 총 지급액'	[참조 2-1 에이$%코리아] 수원지법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한숲약품〉		은 변하지 않으나 '연간 총 구매수량'이 증가하므로, 실질적으로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은 연간 구매계약으로서 잠정적인 기본가격을 설정하고 연간구매수량에 따라 추가 공급수량이 확정되면 연간 총 지급액과 연간 총 구매수량에 따라 1년 단위로 최종적인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물품이 '무료샘플'이라는 명목으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이를 수입할 당시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대가없이 공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 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심) "예해 4.1에 의하면 상업적 관행상 어떠한 계약은 잠정적으로면 결정되는 가격조정약관을 포함하고 있어서 지급하여야할 가격의 최종적인 결정은 해당 계약 자체의 규정에서 정하는 특정한 요소들에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 ...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입물품의 품질 등 일정한 사항을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 요소로 기능케 하면서, 그러한 요소가 변경되거나 사후에 확인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가격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조정약관은 평가대상 물품이 수입통관되기 전 계약상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이 사건 계약 당시 유상구입물품의 기본가격(Base Price)은 한화로 정하고, 발주가 이루어지면 실제 가격(actural price)은 기본가격에	2021구합 63205 (2022.4.28)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와 같이 확정된 기본가격이 향후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는 약정하지 아니한 점(한화로 확정된 기본가격을 원고가 주장하는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 … 구입물량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무상제공량이 달라지고, 이 사건 물품의 무상제공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전체 거래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상제공 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 이 사건 특약은 가격조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2심)	
3	대법원 2011두6554 (2011.6.30.) 부산고법 2010누4117 (2011.2.11.) 부산지법 2009구합4563 (2017.10.13.) 〈아▢▢코리아〉	연구개발비 제품지원비	"… A 그룹의 계열사들은 이 사건 비용배분 합의를 체결하고 있어, 제3자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하는 한 연구개발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연구개발 결과가 상품화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화에 성공한 다른 제품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 마련이므로, 연구개발 결과가 모두 상품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비용과 이 사건 수입물품 사이에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 "…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입물품의 판매비중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 연구개발비용 중 수입물품의 대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는다면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으므로, 비용배분 기준이 계열사 간 수입물품의 거래량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비용이 이 사건 수입물품과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연구개발비는 그 실질이 권리사용료가 아니므로 관세법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사용대가성을 갖출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권리사용료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배분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A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연구개발비용의 지급을 이 사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볼 수 있는 점”	
4	대법원 2020두51617 (2021.2.8.기각) 부산고법 2015누20763 (2020.9.11.) 〈한국◎◎◇◇◇㈜〉	권리사용료 (관련성, 안분)	“...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 등을 포함한 완제품의 생산 과정과 관련되어 지급된 경우에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의 권리사용료만을 가산한다는 취지이므로,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생산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서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권리사용료를 산정한 후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수입물품의 지급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사항은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을 산출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2016두34127(병합) 판결 참조}. ... 따라서 권리사용료가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인 경우 권리사용료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의 산출방법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 물건에 표상되거나 구현되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 상표권 또는 저작권에 대하여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하는 외에 달리 권리사용료	[참조 4-1 한국◎◎◇◇◇㈜] 대법원 2015두745 (2020.2.13.) 부산고법 2014누328 (2015.1.9.) 부산지법 2012구합5818 (2014.2.20.) [참조 4-2 한국◎◎◇◇◇㈜] *서울행정* *2019구합59462* *(2021.2.19. 항소중)* [참조 5-1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중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구별하여 산출할 필요가 없다. ...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요구되는 객관적 자료라 함은 실제의 시장이나 실제의 상거래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말하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라 함은 가산할 금액을 명확히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는 권리사용료가 특정한 완제품의 생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있어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수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이 위임한 취지에 기초하여 합목적적으로 설정한 기준으로 보인다. ... 고시 제3-4조 제2호 ... 단서의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모두 '특정한 완제품의 생산 과정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권리사용료에는 완제품의 생산 과정에 대한 대가 뿐 아니라 완제품에 부착되어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 제4호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에◇◇◇디스플레이 글라스◎◎㈜ 외] 대법원 2016두34110 (2019.2.14.) 서울고법 2015누36395 (2016.1.14.) 서울행정 2013구합59576 (2015.1.30.)
5	대법원 2020두46455(2020.11.26.) 서울고법 2017누77871(2020.7.8.) 서울행정 2015구합83269(2017.9.14.) 〈㈜케○▽숂숂〉	권리사용료	"...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JTI의 기술적 정보가 이 사건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위 수입물품과 일체화되거나 위 수입물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성이 인정된다. ... 위 혼합엽 단계에서 이미 이 사건 완제품 담배의 품질과 특징이 상당 부분 결정되게 된다. ... 기술적 정보가 체화된 혼합엽을 사용하는 대가가 이 사건 로열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은 상표와 기술적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대가로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명시... 이 사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로열티가 지급되었고, 사실상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서울고법 2013누27182 (2014.4.30.) 수원지법 2012구합8350 (2013.8.22.) 〈수◎무역㈜〉	로열티, 독점판매권	"이 사건 사용료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이 사건 주류의 수입자였던 B사의 종래 영업권에 대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B사로부터 이 사건 주류의 독점 수입·판매권(재실시권)을 부여받는 데에 대한 대가, 즉 이 사건 주류의 독점수입·판매권의 대가" "... ... 독점판매권의 부여에 의해 원고가 국내에서 이 사건 주류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서 국내 독점판매권의 보장은 상표권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 이 사건 주류는 그 수입 주류에 독점판매권이 부착 내지 수반되어 있는 경우로서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그 물품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 "... ... D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류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자의 지위를 부여한 상태로 이 사건 주류를 공급한 것은 원고가 그 순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용료를 D사의 특수관계인인 B사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와 판매자인 D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인 원고가 수입물품인 이 사건 주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B사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주류 수입거래의 조건으로 간접적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 6-1 ㈜우☘○○□□ 홀딩스] 서울행정 2018구합87743 (2019.8.2.)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7	대법원 2019두48172 (2019.11.14.) 대구고법 2018누3760 (2019.7.5.) 대구지법 2017구합23331 (2016.6.27.) 〈인○○○주식회사〉	조건사정, 할인	"... ... 사회통념 또는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정한 조건 또는 사정'이 없었더라면 실제의 거래 및 가격과 다른 거래 및 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실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가라고 인정될 경우에만 비로소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특별할인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한 것'은 '가격의 결정'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정이 아니라 '가격의 결정' 그 자체이므로, '특별할인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한 것'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 ... 원고가 국내의 특정 수요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수입품을 수입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일○○○ 사이에, 이 사건 수입품 재판매 상대방을 대한민국 내 특정인으로 제한한다는 내용 또는 그 제한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처분문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의 구두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동기에 불과하다"	[참조 7-1 현대중공업] 대법원 97누 12495 (1998.12.8) 부산고법 96누6196 (1997.7.2.)
8	대법원 2017두35547 (2017.5.31.) 부산고법 2016누23080 (2017.1.13.) 부산지법 2015구합23824 (2016.9.8.) 〈한국베◐◐◇◇◇◇〉	조건·사정 특수관계	" 이 사건 각 제품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으로서 ... ...관련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상한가격(이하 '보험약가'라고 한다)이 사실상 국내 판매가격으로 결정되고, ... 이 사건 계약 제 7.1조, 제8.2조는 공급가격의 기준이 되는 계약제품의 순매출액에 대해서 ... ... 대고객 판매가격으로 산정되는 계약지역 내 계약제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및 부가가치세를 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순매출액은 계약제품의 대고객 판매가격에 판매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 판매가격은 보험약가를 고려한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피고는 … … 원고가 보험약가 인하 예상액을 사전 반영 하여 수입신고한 가격을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비정상 할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위 자료에 따라 산정된 비정상 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취지는 결국 이 사건 각 제품의 실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가 택한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비정상 할인액을 산정하고 거래약정, 즉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실거래가격을 산정하는 데 적정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사후 조정 필요액이 원고가 2010. 소외 독일법인에 ‘DICO Adjustment’로 이미 지급한 20.02억 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0.02억원은 이 사건 각 제품별 수입가격을 조정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독일 법인 사이에 원고에게 발생한 이익을 분배 내지 조정한 것으로서 그 성격이 달라 이를 원고가 이 사건 각 제품 자체에 관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른 이 사건 각 제품의 공급가격을 바탕으로 한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 당사자인 원고와 소외 독일 법인 모두 계약 위반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소외 독일 법인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DICO Adjustment’ 등의 명목으로 이익이 일부 분배되었기 때문”	
9	대법원 2022두 45470(2022.9.29.) 서울고법 2021누 38613(2022.5.10) 서울행정 2019구합54917 (2021.2.17.)	실질판매자 특수관계영향 제4방법	“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한국◆◆◎◎◎㈜〉		2015두58591 판결 참조).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실질에 맞게 재구성하려면 납세의무자인 거래당사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다른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이 되는 '조세회피의 목적'은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 형식의 유일한 또는 가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348 판결 참조)" "… … 구매자와 판매자 간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형식적 소유권 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해당 물품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지을 수 있는 것" "'허◆◎◎◎' 상표와 제조공법(레시피)은 경제적 가치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원고는 허◆본사에 국내생산제품에 관하여만 로열티를 지급하고, 해외생산제품에 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직접 생산자인 이 사건 각 공급업체의 원가와 이윤만 반영되고, 허◆아메리카의 비용, 이익, 로열티는 누락되었는바, 이는 비특수관계인 간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적인 경우이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허◆아메리카로부터 별도의 계약 없이 해외생산제품과 관련한 상표권 사용권한을 무상으로 허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국내생산제품에 대하여는 허◆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한 점, 허◆본사도 원고가 수입한 해외생산제품 중 일부와 관련하여 그 특허권 소유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10	대법 2020두36939 (2020.6.25.) 부산고법 2019누23296 (2020.2.7.) 부산지법 2018구합20697 (2019.8.23.) 〈한국◑◑◑◑㈜〉	특수관계	"관세법의 문언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란 관세 등을 회피, 절감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부당하게 저가로 책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국내 보험약가 인하에 따라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수입가격이 정상 이전가격보다 고가로 책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관세를 회피, 절감할 우려는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11	대법원 2021두53559 (2022.2.11.) 서울고법 2019누64978 (2021.9.3.) 서울행정 2017구합79585 (2016.6.27.) 〈한국◎◎◎◎㈜〉	특수관계, 제4방법	"제4방법은 기업의 개별적인 활동을 고려하는 대신 동종·동류의 물품을 취급하는 경쟁업체들의 평균적인 매출총이익률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서,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총이익률에는 비교대상업체의 동종·동류물품 판매 이에도 다른 영업으로 인한 매출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구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의 제4항, 제5항, 이 사건고시 제26조 제1항 등 참조),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은 평가대상 물품을 포함하면서도 위 물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집단으로 엄격하게 선정될 필요성이 크다 …"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 부산세관장이 관세청 심사정보 시스템에서 의약품업의 업종부호로 조회한 업체들 중 동물용 의약품 수입·판매업체만을 선별하였다면, 모집단인 '의약품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회된 업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체' 자체가 과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시점 또는 그 무렵의 업종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로부터 동물용의약품 수입·판매업체를 선별하더라도 과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 시점 또는 그 무렵의 업종정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을것으로 보인다"	
12	대법원 2022두 38281(2022.6.30.) 서울고법 2021누 37238(2022.2.17) 서울행정2019구합57015 (2021.1.29.) 〈(유)한국▣▣▣▣제약〉	특수관계, 제4방법	"위와 같은 방식 아래에서 협정관세율이 변동할 경우 보험약가에서 공제될 세액 역시 변동되어 수입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레○○○(R○○○○○○) 150mg에 대하여는 이 사건 쟁점물품과 달리 인하된 관세를 즉시 반영하여 신고하였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에 있어 협정관세율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위와 같이 보험약가가 수입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인 이상, 비○○드와 바○○○○ 모두 보험약가와 수입가격이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비○○드가 2013. 11. 6.부터 2015. 8. 18.까지 바○○○○에 비해 보험약가가 낮음에도 수입가격이 높다는 점을 정당화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이 사건 쟁점물품을 비롯한 개별 품목별 목표영업이익률은 전체 목표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되었을 뿐, 품목별로 적용된 구체적 이익률 설정 기준은 없었는바, 이러한 방식의 거래가격 결정은 원고와 이 사건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관세법상 과세가격 평가는 개별품목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개별 품목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판단할 때 거래 전체의 가격결정 방법도 하나의 간접사실로서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13	대법원 2017두72782 (2018.3.15.) 부산고법 2017누21661 (2017.11.10.) 부산지법 2015구합20801 (2017.4.14.) 〈롱◎코리아㈜〉	특수관계	"... 원고가 잘못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고 매출총이익률을 산출한 근거나 자료 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프랑스 본사 등 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에 대해서는 백화점 판매물품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한 반면, 제1차 비교대상업체의 경우 백화점 판매물품 뿐만 아니라 면세점 판매물품을 포함하여 매출총이익률을 계산하였는바, 피고의 조사방식은 원고와 제1차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을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한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이라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의 조사방식은 ... 신뢰할 수 없다. 오히려 ... 원고의 백화점 및 면세점 매출총이익률은 ... 제1차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원고의 영업이익률은 피고가 동종동류로 최종 선정한 업체들(제2차 비교대상업체)의 영업이익률 평균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자의 주관과 산출방법에 따라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이나 과세가격이 신축적일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선정한 1차 비교대상업체와 제2차 비교대상업체가 상이한데다 원고와 제2차 비교대상업체 사이에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가격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제2차 비교대상업체를 적정하게 선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 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하고... 가급적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두1718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대법원 2019두62987 (2020.3.26. 기각) 서울고법 2019누39514 (2019.11.27.) 인천지법 2016구합50338 (2019.2.14.)	특수관계, 제4방법	"... 특수관계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수출자 또는 에너자이저 그룹 본사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면 그 수입가격을 그대로 수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특이한 수입가격 결정방식은 ... 이 사건 물품 중 생리대의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에□♠♠♠코리아㈜〉		수입가격은 이 사건 수출자가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원고와 이 사건 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 구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가 삭제되기 전인 2012.2.27.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수입물품에 대하여 2012.2.2.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동·동류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종·동류비율에 기초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이 관세청장이 산출한 기준비율 또는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산출한 인정비율에 기초하여 산정한 과세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	
15	대법원 2019두62079 (2020.4.9. 기각) 부산고법 2018누21903 (2019.11.8.) 부산지법 2017구합20287 (2018.5.31.) 〈로□◆◆◆코리아㈜〉	특수관계, 제4방법	"... 본사는 원고가 수입하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을 직접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된 이후 국내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는 이 사건 물품의 할인기간 나아가 이 사건 물품의 국내소비자판매가격까지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와 수출자인 이 사건 본사와의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상정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 본사가 정한 할인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저가로서 원고와 이 사건 본사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것이다." "국내판매가격 산정 시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백화점과 특약매입거래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할 때 수입 후 최초의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수입 후 최초의 거래가 있다고 보아 백화점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이 사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이 수입되는 시점과 동시 또는 유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비교대상업체 역시 그러한 시점을 기준으로 추출·선정하여야 한다.... 관세청 심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업종의 변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동 등 사정에 따라 수입 시점 또는 그 무렵을 기준으로 동종·동류의 물품을 수입하고 있지 않던 업체가 비교대상업체후보로 추출될 수 있거나 수입시 또는 그 무렵을 기준으로 동종동류의 물품을 수입하였던 업체임에도 비교대상업체후보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이 사건 고시에 위배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최초 산정하여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 내용을 반영하여 유리하도록 동종·동류비율을 상향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16	대법원 2018두57933 (2019.1.17.) 서울고법 2018누30923 (2018.8.31.) 서울행정 2016구합66308 (2017.12.1.) 〈에◇▲▲◐◐◐㈜ 〉	합리적 방법, 거래가격 No Price	"원고는 GEII에게 분기별 수수료 중 변동비에 쟁점 부품의 대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쟁점 부품의 수입신고가격 합계액이 435억 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쟁점 부품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출거래 당사자 사이의 합의된 가격으로 합의에 따라 실제로 지급한 가격이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될 당시에 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품과 용역의 대가가 포함된 결합계약에서 전체의 대가에 대하여 같은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비록 부품의 대가만 구분하여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이 부품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실제지급가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쟁점 부품의 과세가격을 최초 예비부품, 추가업무 부품, 한도를 초과하는 비계획정비 부품(이하 통칭하여 '나머지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가격인 GE 기준가격의 75%(또는 GE 기준가격에서 25%의 할인율)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7	서울고법 2014누73908 (2015.6.18.) 서울행정 2014구합59429 (2014.11.14.) 〈에□□□□코리아〉	합리적 방법 (보세공장, 제품과세)	“원고는 각종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조·가공하는 보세공장 운영인으로서 반도체 IC칩(이 사건 물품)을 생산하는 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였는바, 원고의 수입행위가 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세법 제30조 규정상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가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탁업체가 제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위탁업체들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웨이퍼 가격을 산출한 후, 원고의 임가공비용등을 합산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 대가에 가장 근접한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된 과세가격으로 보인다. …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 제품과세 방식을 선택한 이상, 웨이퍼의 가격을 포함한 이 사건 물품 전체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라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제조자이자,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때에 스스로 수입자가 되어 수입신고를 하여왔는데, 이 때 과세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가격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어서 웨이퍼의 가격이 포함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 원고가 임가공 거래만을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웨이퍼의 가격을 이 사건 물품의 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은 웨이퍼 가격이 포함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이므로, 이 사건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 관세 과세가격(웨이퍼 가격이 포함된 이 사건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18	서울고법 2020누34638 (2020.10.30. 확정) 서울행정 2018구합62799 (2020.1.31.) 〈데■■코리아㈜〉	합리적 방법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	"... 이러한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 배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19	대법원 2022두37981 (2022.6.30. 기각) 서울고법 2021누35089 (2022.2.11.) 서울행정 2017구합83762 (2021.1.26.) 〈내△△오일◆◆◆◆코리아(유)〉	합리적 방법 (수탁가공용 부분품)	"구 관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가 제6-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야 하고 (제1항 제3호),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 2항 제4호)고 규정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제6-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도 관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거래 단계나 상업적 가치도 동일하지 않은 시추선용 장비 완제품을 판매하는 NOVN의 매출 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제6-5 방법에 따른 합리적·신축적 적용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와 NOVN의 특수관계를 배제한 상태를 가정한다면,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해외 생산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면 되므로,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과세가격은 'NOVN'이 국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가격이 아니라, '이 사건 물품의 해외 생산자'가 국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을 가격이라고 봄이	

연번	판결	주제	주요 내용	비고
			타당하다” “이 사건 물품은 NOVN이 원고에게 ‘이를 가공·조립하여 국내 조선소에 인도’ 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위탁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물품 거래 중 NOVN이 위탁제조를 위해 해외 생산자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무상물품 공급의 실질은 생산지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생산지원의 경우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에 생산지원 물품의 구입가격과 운임만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무상물품에 관한 과세가격 결정은 이와 균형이 맞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0	대법원 2022두38007 (2022.6.30. 기각) 서울고법 2019누37198 (2022.2.11.) 서울행정 2017구합77480 (2019.1.1.) 〈제◐◐◐◐□□□□코리아㈜〉	합리적 방법 (보세공장 제품과세)	“ 이 사건 공급재료는 한국A가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위탁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A가 위탁제조를 위해 해외 생산자로부터 구입 하여 무상으로 한국A에 제공한 이 사건 공급재료 거래의 실질은 생산지원과 유사하다. 생산지원의 경우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에 생산지원 물품의 구입가격과 운임만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공급재료에 관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이와 균형이 맞지 않고,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 이 사건 물품은 721종의 외국물품과 약 4,983종의 내국물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공급재료는 위 721종의 외국물품 중 일부이다. 이 사건 공급재료는 한국A 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혼용된 후 원고에게 인도되었는데, 그 때에 일본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 인도의무도 이행되었다. 일본A가 이 사건 물품을 원고에게 인도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매출총이익율을 그 이전의 단계인 ‘한국A에 대한 일부 부품 조달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별첨 6

판례 평석 작성 요령

I. 원고 작성 일반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분	위/아래	오른쪽/왼쪽	머리말/꼬리말	제본
여백	각 20mm	각 30mm	각 8.5mm	0mm

2. 원고는 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 및 그림,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1) 표지는 원고의 제목(영문 표기), 필자의 이름(영문·한자 표기), 소속, 직책, 연락처(주소·전화번호·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

2) 목차는 Ⅰ, 1, 1), (1)의 순으로 표기한다.

※ 제목 및 표, 그림 등의 번호전개

구 분	전개번호	크기	구 분	전개번호	전개번호 위치
장	Ⅰ	16	표	〈표 1〉	표 제목 앞, 표 위 가운데
절	1	13	그림	[그림 1]	그림 제목 앞, 그림 위 가운데
항	1)	12	수식	(1)	수식 뒤(우측 끝)
목	(1)	12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글꼴 신명조·글자크기 12포인트·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 글자 크기

구 분	크기	비 고(표기)	구 분	크기	비 고(표기)
표지의 제목	16	**진하게**	부록제목	12	〈부록 1〉
본문의 소제목	13		수 식	12	(1)
본문 내용	12		소 속	10	
성 명	12		각 주	10	1)
요 약	12	〈요 약〉	표 속의 글	11	
표제목	12	〈표 1〉	그림 속의 글	11	
그림제목	12	〈그림 1〉	부록 속의 글	11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본문 면의 하단에 아래의 출전표시요령, 인터넷 자료인용, 참고문헌 작성 요령 등을 준용하여 간결하게 표시하며, 글꼴 중고딕·글자크기 10포인트·줄간격 130%로 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 표 그리기 요령

구 분	선 모양	비 고	구 분	선 모양	비 고
맨 위/맨 아래	———	진한선	내 부	.....	보통선 또는 점선
왼 쪽/오른 쪽		투명선	표두 아래쪽	═══	이중 실선

6)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참고 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는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5.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6.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7. 외국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8.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 :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II.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서명, 저자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구체적인 예

1) 저자 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 홍길동(1996)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 (Moore 1966)

2) 저자 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 (홍길동 1966)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로 표기한다.

예 : (Evans 1979, 56)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 (한배호 외 1991, 35-36)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6) 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月/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 (XX일보 93/04/08, 5)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 : 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 (XXX연구원 1992)

Ⅲ.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 홍길동.1996."한국의통상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 1998. 10. 20)

2. 분량이 많아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예 : 홍길동.1996."한국의통일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 1998. 10. 20). (1/10 Bar)

Ⅳ.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 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 홍길동·장길산. 1996.『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 未來社. 린위쥔 (林昱君). 1986.『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보고서·간행물·서적 등인 경우는 꺽쇠(「 」)로 표시한다.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5. 저자표기
   1) 저자 1인인 경우
      예 : 장서방. 1993.『변화하는 유권자 : 14대 총선의 분석』. 서울 : 믿음사. Tillich, Paul. 1951-63.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예 : 홍길동·허생·흥부. 1993.『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 XX연구원.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돌석 외. 1992.『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6. 학위 논문 표기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7. 편집된 책 속의 글 표기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예 :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연놀부·이어도 편, 『국가 이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 호박사.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 :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직자본주의의 정치』, 261-306. 서울 : 집현연구소.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예 : Bell, Daniel 저·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 개벽사

별첨 7

판례 평석 작성 예시

구매자가 부담하는 광고선전비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2.26. 선고 2013두14764 판결〉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I. 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의 요지와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라이센서들 사이의 프랜차이즈 계약

원고들은 미국 등 해외영화배급사가 한국에서의 영화의 수입 및 배급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이다.

원고들은 해외영화배급사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영화배급에 관한 권리를 허여받은 라이센서(이하 총칭하여 '라이센서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한국 내 영화배급 활동에 관한 프랜차이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라이센서들로부터 그들이 배급권을 가지는 영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상영할 수 있고 라이센서들에게 그 대가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로열티 = 영화의 총 매출액 − 배급수수료(총 매출액 중 12%) − 배급비용*
* 배급비용 = 영화의 광고선전비, 수입허가비용, 개봉수수료, 번역 등 제반 비용

이에 따라 원고들은 라이센서들로부터 국내에서 흥행가능성이 있는 영화 등을 선별·수입하여 국내에서 상영하면서 수입영화 등에 대한 광고선전을 위한 광고대행사의 선정과 광고선전계약의 체결 및 광고선전비의 지급, 구체적인 광고내용·매체·시기·비용의 결정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라이센서들에게 로열티로서 원고들의 매출액인 관객입장수입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영화필름 대여료에서 12%의 배급수수료와 광고선전비 등 배급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한편 라이센서들은 광고선전의 시안을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광고선전비의 총액한도를 설정하며 배급비용에 관하여 예산승인권을 행사하고 원고들의 장부기장에 대하여 검사하는 등으로 원고들의 광고선전활동에 대하여 통제와 지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10. 6.경 라이센서들로부터 수십건의 영화용 필름(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통관지 세관장에게 관세로서 필름 길이당 부과되는 종량세를 납부하는 한편, 수입부가가치세로서 필름의 수입시에 신고하는 금액[1] 이외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추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로열티가 수입영화의 국내 상영 종료 후에야 확정되므로 관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잠정가격으로 로열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영화의 상영 종료 후 원고들의 매출액에서 배급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등 배급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라이센서들에게 송금하고 그 로열티의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로열티에서 공제한 광고선전비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의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 5. 11.부터 2010. 6. 18.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로열티에 광고선전비 상당액(이하 '이 사건 광고선전비'라고 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3,393,895,735원 및 가산세 958,813,653원 합계 4,352,710,828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판결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4항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는 제1항 본문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본문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지급가격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0조 제6항은 "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을 들고 있다.

한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1의 제1조에 관한 주해는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on his own account)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지급가격에 부가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on his own account)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활동의 가치는 관세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활동이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수입물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선전 활동은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인 점, 배급수수료의 증가를 위하여 광고선전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원고들이 수입물품인 영화용 필름 등에 관한 광고선전 계약의 체결과 비용 지급 등 광고선전 활동을 직접 하고 있으므로, 광고선전비의 지급은 구매자인 원고들의 광고대행사 및 광고회사에 대한 의무일 뿐 판매자의 의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광고선전비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광고선전비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II. 대상판결의 평석

1. 이 사건의 쟁점 및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광고선전비가 로열티의 간접적인 지급액(이하 '간접지급액'이라고 한다)으로서 이 사건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지급이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호에서 간접지급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1의 제1조에 관한 주해에서 간접지급액에서 제외하는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이고(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다(관세법 제15조). 관세법상 대부분의 품목이 수입물품의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이 사건 수입물품은 종량세의 대상이 되므로 관세 목적에서는 과세가격을 파악할 필요가 없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만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지적재산권의 대가, 물품대금 외에 발생하는 비용, 수입자나 중개업자의 이윤 등의 요소가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가 관세평가이다. 개별 국가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제무역의 저해를 방지하고, 국제무역의 확대와 원활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관세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거래가격'이라고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면서, 단서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여 보충적 관세평가방법을 두고 있다.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된 관세평가방법을 실무상 제1 방법 내지 제6 방법[2]으로 칭한다. 대부분의 관세평가는 제1 방법에 따라 행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97% 이상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 제1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3]

관세법 제30조 제2항은 "실제거래가격이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실제거래가격이란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그리고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급되는 간접지급액을 포함한 총 금액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원고들이 부담하는 광고선전비가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다. 피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들의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배급수수료도 증가하지만 그 보다는 라이센서들이 수취하는 로열티의 증가가 더 크므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 지출의 실질적 이해관계자는 라이센서들이고 라이센서들이 사실상 이 사건 광고선전비를 원고들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낮추어 수입부가가치세의 부담을 회피한 것이므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호의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지급은 시장판매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배급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하여 체결한 광고선전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판매자인 라이센서들에게 이

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의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WTO 관세평가협약 부속서 1의 제1조에 관한 주해에서 간접지급액에서 제외하는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라이센서들이 광고선전비 100을 직접 부담하고, 원고들로부터 로열티 200을 받아 오다가 원고들로 하여금 광고선전비 100을 지출하도록 하면 라이센서들로서는 광고선전비 100을 줄일 수 있어 로열티 100을 받더라도 전체 수익에는 변화가 없고 그 경우 종전보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100만큼 감소하여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회피된다는 것이 피고의 입장이고, 라이센서들이 원고들로부터 로열티 200을 받아오다가 원고에게 광고선전비 100을 부담하고 로열티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도 않았고 광고선전비 100은 자신의 계산과 판단에 의하여 부담한 지출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입장이다.

2. 관세법상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의 범위

가.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의 규정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에 법정가산요소와 법정공제요소를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관세법 제30조 제2항은 실제거래가격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에 더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등 간접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간접지급액에 관하여 대가의 제3자 지급, 하자보증비, 외국훈련비나 외국교육비, 금융비용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 간접지급액'의 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조정항목에 해당하는 법정가산요소 및 법정공제요소와 구분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그 법정가산요소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제1호), 구매자가 부담하는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비용과 수입물품의 포장비용(제2호), 생산지원비용, 즉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그 인하차액을 법정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제3호),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사용료(제4호), 해당 해당수입물품의 사후귀속이익[4](제5호) 및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운송관련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2항은 그 법정공제요소로서 수입 후에 행해지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제1호),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제2호),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제3호), 연불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은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액에 대해서는 예시주의 입장을 취하는 반면 실제거래가액에서 조정되는 법정가산요소와 법정공제요소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간접지급액이나 법정가산요소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은 크지 않으나 특정지급액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지급액이 법정공제요소에 해당한다면 반대로 간접지급액이 되지 않아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 WTO 관세평가협약의 규정

우리나라는 1994. 12. 30. WTO 관세평가협약에 가입하여 WTO 평가협약의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위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헌법 제6조 제1항).[5] WTO 평가협약은 일반서설(general introductory commentary), 24개의 본문조항(article), 3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되어 있다. 3개의 부속서 중 부속서 1은 주해(interpretative notes)이다.[6] 위 협약 제14조는 부속서 1 주해(Interpretative Notes) 및 부속서 2, 3도 WTO 관세평가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속서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WTO 관세평가협약은 간접지급액을 '실제거래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즉, 수입물품을 이전 받는 데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이나 기타의 지급 등은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WTO 평가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제1항 및 제4항). '당해 수입물품'과의 관련 요건은 경우에 따라 특정지급액이 간접지급액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어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된 모든 금액은 간접지급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WTO 평가협약 부속서 3. 제7항). 판매조건 내지 거래조건은 대가보다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수입물품과 불가분의 일체를 형성하는 포장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판매조건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7].

둘째, 적극적 요건으로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WTO 평가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1항). 실제거래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WTO 평가협약 제1조의 주해 제1항). 다만,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on his own account)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비용은 제외 된다. 즉, 소극적 요건으로서,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 WTO 평가협약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8] 이외에 구매자 자신이 부담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액으로 간주될 수 없다(WTO 평가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다'는 의미는, 비용이 구매자에 의해 발생되고 또한 지급된다는 의미이다. 위와 같은 활동은 구매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지급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다[9].

위 요건에 관하여,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WTO 관세평가협약 제8조에 규정된 가산요소는 간접지급으로 간주하되, 협약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어떠한 지급금액도 간접지급액이 아니라는 견해[10]도 있지만 WTO 관세평가협약이 실제지급가격에 관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지급금액'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취지 및 간접지급액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을 제외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

위 요건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행위가 간접지급액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수입 이후 발생한 활동이라도 동일하다(WCO 예해 9.1 수입국에서 발생한 활동에 대한 비용의 처리). 또한 수입물품 구매 이후 실제 수입 이전에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한 광고선전비는 비록 그것이 판매자의 이익이 되더라도 간접지급액으로 보아서는 안된다(WCO 예해 16.1 물품구입 후 수입 전에 구매자의 계산으로 수행된 활동). 다만,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WTO 평가협약 제8조의 조정사항은 당연히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WTO 평가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2항).

다.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의 유형

(1) 상계지급과 판매자의 채무변제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와 상계하거나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그 상계지급액과 제3자 채무변제액은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호). 구매자가 거래조건으로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수입물품의 대가를 할인받은 경우에도 그 할인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수입물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실질이 같으므로 그 지급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고가 외국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독점판매하면서 자동차의 전시, 판매망 구축, 광고 및 판촉계획의 수립, 자동차에 대한 보증·유지 등을 원고가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디스트리뷰터 방식'에 의하되, 이 방식은 외국회사가 판매대리상을 두어 위와 같은 용역을 부담하고 판매대리상에 대하여는 판매에 따른 일정 비율의 이익만을 보장하여 주는 통상의 판매방식인 '딜러 방식'보다 원고에게 불리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고에게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자동차를 할인가격에 수입한 사안에서 외국회사

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여 원고가 외국회사에게 자동차에 대한 가격 일부를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할인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7881 판결).

반면 대법원은 원고가 외국회사들로부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을 수입하면서 할인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외국회사들이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무상보증수리의무를 대신 부담하고 그 대가로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통상 판매가격보다 일정 비율만큼 할인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 할인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원고와 외국회사들 사이에는 그러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은 할인가격이 통상의 가격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외국회사들로부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을 수입하면서 할인받은 금액은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12495 판결).

(2) 하자보증비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하면서 별도로 구매자에게 하자보증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구매자가 하자보증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하자보증비는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수입거래의 조건으로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하기로 정하고 하자보증비만큼 할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할인금액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원고가 외국회사로부터 네트워크통신기기를 수입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본래의 시스템 성능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의 수리·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지원, 기타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외국회사가 하고 원고가 그 유지비용 명목으로 그 대가를 외국회사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가 포함되는 반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정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거래가격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하자보증이란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하여 그 수입물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상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정기간 동안 수출자의 책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자보증비는 그것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유지의 개념에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그 내구연한 동안 당해 수입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수리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11305 판결).

(3) 외국훈련비와 외국교육비 및 금융비용

판매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구매자에게 훈련비 또는 교육비의 지급을 요구하여 구매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3호). 이는 수입물품의 대가는 아니지만 거래조건으로 훈련 또는 교육을 제공하고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반면에 그 훈련 등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구매자와의 특약에 의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간접지급액이 된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조건으로 그 비용을 구매자에게 부담시킨다면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그 대금지급기한 등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한 사안에서 이러한 비용은 성질상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관련 서류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추가적인 금융비용을 해당 수입대가 등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거래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두6267 판결).

3.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의 판단기준과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해당여부

가. 간접지급액의 판단기준

(1) 관세법과 WTO 평가협약상의 판단기준

간접지급액에 관한 관세법령과 WTO 평가협약의 규정을 정리하면 간접지급액의 해당여부는 ① 특정지급액이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지와 ② 그 지급액이 구매자 자기의 계산에 의하여 행하여졌는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전자는 거래조건 기준, 후자는 자기계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자의 특정지급액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면 이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된다. 단순히 판매자와 합의나 양해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지급액이 거래조건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거래조건에 따라 행해지는 지급액은 명시적인 거래약정에 의한 경우와 묵시적인 약정에 의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특정지급액은 수입물품의 거래약정과 관련이 있어야 그 거래의 간접지급액이 된다. 그러한 관련이 없다면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액이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상의 간접지급액이 될 수 없다(WTO 평가협약 제1조에 대한 주해 제4항). 거래조건 기준에 해당하면 간접지급액이 되므로 이를 적극적 기준, 자기계산 기준에 해당하면 간접지급액에서 제외되므로 소극적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거래조건 기준

명시적 거래조건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간접지급액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호의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11] 판매자가 요청하고 구매자가 승낙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이다. 묵시적 거래조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을 들 수 있다. 통상 구매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요청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약정이 추정된다. 구매자의 채무변제는 특정의 거래와 관련성이 있어야 간접지급액이 된다. 그 밖에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호),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제2호),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제3호), 그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제4호)이 거래조건 기준에 해당하는 간접지급액이다. 지급금액의 거래조건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약정될 수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3) 자기계산 기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지급액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지급이 행해지는 경우이다. 자기계산 기준에 의하여 간접지급액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판매활동 비용이다. 비록 판매자와 합의에 의하더라도 구매자가 그 자신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마케팅에 관련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그 지급액은 간접지급액이 아니다(WTO 평가협약 제1조 주해 제1단락 (b), 2), 구매자가 기계를 구입한 후에 그 기계가 판매계약의 조건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적 전 시험검사를 한 경우 그 검사비용도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WCO 예해 16.1 제3항).

일반적으로 특정지급액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여 간접지급액의 적극적 기준을 충족하면 이는 자신의 약정상의 의무이행으로서 통상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지급액이 되므로 자기계산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명시적 거래약정이 있다면 간접지급액의 판단은 용이할 것이나 묵시적 거래약정의 유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기계산 기준이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특정지급액에 관하여 명시적 거래약정에 없는 상태에서 자기계산 기준이 충족된다면 그 지급액에 관하여 묵시적 거래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나.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관세법상 간접지급액 해당

(1) 제1설

제1설은 이 사건 광고선전비가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는 견해로서 피고의 주장이다. 영화의 판권은 라이센서들에게 귀속되고, 판권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광고선전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들은 라이센서들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 수행한 것인 점, 실제로 라이센서들은 광고선전의 시안을 만들어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원고들은 이를 단순히 복사하여 국내 매체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며, 광고선전활동을 통해 매출이 증가될 경우 라이센서들의 로열티 이익 증가분이 원고들의 배급수수료 증가분보다 크다는 점, 이 사건 계약은 라이센서들이 배급비용에 관해 예산승인권이 있으며, 원고들에게 장부 기장을 요구하고 이를 검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등 원고들의 광고선전활동은 라이센서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투자주간사가 영화의 수익과 비용의 주체이며 원고들과 같은 배급대행사는 배급수수료만을 수취할 뿐이므로, 원고들의 본래 역할이 광고선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과 라이센서들과 같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광고선전비를 영화제작사가 부담한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요컨대, 제1설은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선전비는 간접지급액의 판단기준인 묵시적 거래조건 기준에 해당하고 소극적 요건인 자기계산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제2설

제2설은 이 사건 광고선전비는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로서 원고들의 주장이다.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선전 활동은 그 성격상 판매자가 행해야 하는 활동이 아니라 구매자가 행해야 하는 활동이고, 효과적인 광고활동의 수행은 원고들 및 라이센서들 모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원고들은 자신의 고유한 사업활동으로서 광고선전 등의 국내배급활동을 한 것인 점, 원고들은 직접 라이센서들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 중 국내에서 흥행 가능성이 있는 영화를 선별하며, 흥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광고선전비 지출규모를 정하고, 라이센서들은 경영관리 목적에서 광고선전비를 총액 기준으로 승인할 뿐, 개별 지출규모에 대한 원고 판단을 존중하였던 점, 원고들은 광고선전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해당 계약상 모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광고시안을 제작 기초자료를 가진 라이센서들이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 점, 원고들은 해외 제작영화를 국내에 배급할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제작 영화 기준으로는 판권소유 투자회사에 해당하며, 실제로 상영관으로부터의 매출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로열티 산정방식은 전 세계 영화산업에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방법이라는 점 등을 그 논거로 제시한다. 요컨대, 제2설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부담은 원고와 라이센서들 사이의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자기계산에 따른 지출이라는 것이다.

(3) 대상판결의 입장

대상판결은 관세법과 WTO 평가협약상의 관련 규정을 판단의 전제로서 언급한 다음 수입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하는 광고선전활동은 시장판매에 관한 활동인 점, 배급수수료의 증가를 위하여 광고선전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원고들이 수입물품인 영화용 필름 등에 관한 광고선전계약의 체결과 비용 지급 등 광고선전활동을 직접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의 지급은 구매자인 원고들의 광고대행사 및 광고회사에 대한 의무일 뿐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판시함으로써 제2설의 입장을 택하였다. 대상판결이 언급한 광고선전의 시장 판매 관련성, 구매자의 수익증대 관련성 부분은 간접지급액의 적극적 기준인 자기계산 기준과, 광고선전비의 지급의무 부분은 거래조건 기준과 각 관련이 있는바,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한 광고선전활동은 정상적인 시장판매활동이고, 광고선전비의 지급은 판매자에 대한 의무는 아니므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는 자기계산 기준과 거래조건 기준에 따라 간접지급액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상판결은 광고선전비가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7881 판결과 비교된다. 위 대법원 판례는 해외 제조업체가 생산한 자동차의 국내 독점판매권자가 국내에서의 판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용역, 즉 자동차 전시장 건물의 설치, 판매망의 구축, 광고 및 판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동차 판매 이후 애프터서비스 등을 구매자가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까지 구매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디스트리뷰터 방식에 의하는 대신 통상적인 방식인 딜러 방식의 판매가격보다 5% 할인된 가격으로 자동차를 수입한 사안에서, '구매자는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여 자동차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이고, 그 가치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5%인 것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례는 5%의 할인액이 광고선전비 등의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으로 약정된 자동차 판매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결국 그와 같은 지출은 거래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며 그러한 지출이 거래계의 관행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간접지급액의 거래조건 기준과 자기계산 기준에 따르면 간접지급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대상판결 사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구매자가 광고선전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하는 사정이 없고 원고들의 광고선전비의 부담이 해외영화의 국내 배급사의 일반적인 거래형태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수익에도 기여함으로써 거래조건 기준과 자기계산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어,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과는 구별된다.

4. 대상판결의 의미와 평가

대상판결은 이 사건 광고선전비가 관세법상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인 로열티에 포함되는 간접지

급액에 해당하는지를 내국세법 인 관세법 제30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1호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WTO 관세평가협약에서 간접지급액의 판단기준으로 제시되는 거래조건 기준과 자기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고 이 사건 광고선전비가 이 사건 수입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관세법 제30조,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간접지급액'을 예시하고 있을 뿐, 그 범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반면 WTO 관세평가협약은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활동한 경우에는 간접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상판결은 ① 특정지급액이 시장판매와 관련되는 활동인지 여부, 구매자의 수익증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② 광고선전활동을 실제 누가 수행하는지, 광고선전비의 지급의무는 누구에 부담하는지 등을 간접지급액의 판단을 위한 자기계산 기준과 거래조건 기준의 구체적 요소로 제시하였는바, 명시적인 거래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 지급액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이러한 판단은 광고선전의 시장 판매 관련성, 구매자의 수익증대 관련성 부분 및 광고선전비의 지급의무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 광고선전비가 간접지급액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간접지급액의 판단기준에 대한 직접적인 판시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추후 다른 유사 사안에서 간접지급액의 적극적 판단기준인 거래조건 기준과 소극적 판단기준인 자기계산 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판시가 있기를 기대한다.

[각주]

[1] 통상 수입시 필름당 100만원 내외를 신고한다.

[2] 제1 방법은 해당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2 방법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3 방법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4 방법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5 방법은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제6 방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다. 관세평가방법은 제1 방법부터 제6 방법까지 순차로 적용된다(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3] 정재완,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6, 228면.

[4]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4565 판결 등 참조.

[6] 관세평가제도의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WTO에 관세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관세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결정(decision)의 형식으로 발표된다.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관세평가기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관세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권고의견(advisory opinions), 예해(commentary), 해설(explanatory note), 사례연구(case study) 및 연구(study)라는 형식으로 발표되고 있다.

[7] 성원제, "관세법상 간접지급에 대한 관세평가", 재판자료 제125집, 2013, 214면.

[8]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가산요소와 같다.

[9]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116면.

[10] 김기인, 상게서, 114면.

[11]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의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은 간접지급액의 예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입물품에 대가에 대한 거래약정이 존재하고 다만 대가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의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직접 지급액으로도 볼 수 있다.

※ 해당 평석에 대한 요약서(2-3 page 분량) 필수 작성·제출